

朝鮮初涼廳考

申榮勳

(목수 한옥 연구실)

I

태조 이성계는 태종의 원년(1401) 9월 15일에 숙신(淑慎) 응주를 위하여 문서 한 통을 작성하고 수결한다. 향방동(香房洞)에 집을 지어 영구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문서에 집의 규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¹⁾

1. 身梗 貳間 前後退 瓦蓋
2. 東付舍 壹間 瓦蓋
3. 廚舍 壹間 瓦蓋
4. 酒房 三間 草蓋
5. 庫房 三間 前後退 草蓋
6. 樓上庫 貳間 草蓋
7. 內舍廊 肆間 草蓋
8. 西房 貳間 前後退 草蓋
9. 南廳 三間 前退 草蓋
10. 樓上庫 參間 瓦蓋
合貳拾肆間

1) 太祖賜給施致土地文書, 秦弘燮編 韓國美術史資料集成(3), 一志社 1991. 9月刊, 33頁의 「淑慎翁主家垈」조 참조

이 집의 구조는 거의 일실일동(一室一棟)의 제도를 아직 답습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9에 해당하는 남첨이 내게는 관심거리가 된다. 기록의 첫머리에 1로 등재된 것이 정침이라고 보인다. 3과 4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침이어야 한다. 그랬을때 8, 9는 과연 어떤 소용이었느냐에 의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8은 구들 들인 온돌방으로 봐도 무난하다고 하면 9는 마루 깐 구조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루만 깐 건물의 용도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가 주목거리인 것이다.

이것의 탐색은 아직 우리가 간파하였던 것을 재음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시론이므로 차후의 보완이 전제되고 있다.

II

태조가 아직 개경의 시좌궁(時坐宮)에 머물렀을 때의 일이다. 돌팔매로 투석전하는 것을 관전한다. 동양첨(東涼廳)에서이었다.²⁾ 여기의 양첨

이 옹주집의 남청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양청을 태조는 서울의 경복궁에도 짓는다. 거기에서 옛친구와 개국공신 정도전등과 술을 나누며 즐긴다.³⁾

양청은 태종 때에도 있었다.⁴⁾ 이후의 역대에도 존재한다.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구조물이었다.

양청에 유사한 명칭에 양정(涼亭)이 있다. 경복궁에 양정이 있었다. 태조는 여러 개국공신들과 거기에서 연회하였다.⁵⁾ 그뿐만 아니라 태조는 그 양정에 이어(移御) 하기도 하였다.⁶⁾ 침식이 가능하도록 조영된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정에 유사하였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에 양루(涼樓)가 있다. 고려시대의 명칭인데 충렬왕이 거동하였다.⁷⁾

양정, 양정, 양루는 다 마루를 깐 건물의 유형이라고 보아도 좋을듯 하다. 거기에 시원하다는 뜻의 양(涼)이 합성해서 명칭을 이루었다고 보인다.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하고 북량정에 이어하였다는 점에서 침실도 구비되었다고 본다면 청도 침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마침 그런 예가 태조때 보인다. 세자전(世子殿)의 양청역(涼廳)을 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자가 좌우에게 말하기를 내 거처가 좁고 낮아서 어떻게 여름을 지내야 할지.

하였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작은 양청」(小涼廳)을 짓게 하였다. 태조가 알았다. 금년같이 공역이 방창한 해에 양청을 지어서 어떻게

2) 太祖實錄 卷5 太祖 3年 4月 壬申「上坐東涼廳 召閱擲石軍」

3) 太祖實錄 卷5 太祖 4年 3月 癸丑「上 置酒新宮涼廳 ……」

4) 太祖實錄 卷3 太宗 2年 5月 2未「御涼廳觀射」

5)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5月 癸巳「置酒于北涼亭」

6) 太祖實錄 卷15 太祖 7年 9月 壬午「上王移居于北涼亭」

7) 東史綱目 第十二 下 忠烈王 13年 7月 「……親助征 公主餞于涼樓……」, 15年 5月 「王及公主 宴于涼樓……」

하겠느냐고 중지명령을 내린다.⁸⁾

양청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침전이었음을 알게 된다.

세자의 작은 양청을 짓지 못하게 한 태조는 이듬해에 수창궁(壽昌宮)의 서쪽 침실을 헐어내고 그자리에 이층전을 짓는다. 중층의 침전이 이룩된 것이다.⁹⁾ 중층의 침전은 한양에 경영한 궁에서도 채택되었던 듯하다. 분명하게 이층전이나 중층전등으로 표기하진 않았으나 경복궁에 루침(樓寢)이 있다고 하고¹⁰⁾ 태종도 창덕궁에 루침을 지었다.¹¹⁾

이들은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었다. 어디에 부속된 마루깐 건물과는 달랐다. 덕수궁에 석어당(昔御堂)이 현존해 있다. 중층의 건물이다. 선조가 경운궁을 경영하면서 창덕궁에서나 마찬가지의 루침전을 영선하였다고 한다면 혹시 그것을 석어당과 같은 건물로 조성하였던 것이나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석어당이 선조의 루침전이나 이층 침전이었다고 한다면 수창궁의 이층침전과 함께 견주어야 되겠는데 아직 내게는 석어당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 없어서 단정하지는 못하겠다.

그렇긴 해도 수창궁의 이층침전과 경복궁·창덕궁의 루침전의 존재에서 경운궁에도 그에 유사한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면 석어당의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정확한 부정의 자료가 없는한 이층침전의 한 유형이었다고 추정해서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석어당의 존재와 수창궁 이층침전의 자료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 여타의 이궁이나 별궁에 규모야 어떠하였던지 그런 유형이 침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고하여 준다.

양청의 존재를 특기한 것은 이미 육실(燠室)이라는 온돌방이 채택되어 있던 데서 상대적으로 표

8) 太祖實錄 卷3 太祖2年 5月辛亥。

9) 太祖實錄 卷5 太祖3年 正月 壬寅「命毀壽昌宮西寢室營二層殿 以金師幸督役」

10) 太宗實錄 卷12 太宗6年 8月 辛卯「鳩鵲鳴于景福宮樓寢殿上」

11) 太宗實錄 卷21 太宗11年 3月 戊寅「構樓寢室于昌德宮」

현할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기록을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제주목의 관아에 절제사영(節制使營)으로 쓰는 흥화각(弘化閣)이 있었다. 원래 안무사영(按撫使營)이었어서 전공조참관을 지낸 최해산(崔海山)이 안무사로 부임한 이후에 중수한다. 그때의 일을 고득종(高得宗)이 기록하였다. 먼저 연침의 방을 지었다. (先起燕寢之室) 금당(琴堂) 육방(浴房) 포주(庖廚), 낭사(廊舍) 등을 빠짐없이 구비하였다. 조금 서편에 당을 따로 지었고 다시 그 서쪽에 또 3간을 건각(建閣)하였고 다시 남쪽으로 당을, 북쪽에 마구간을, 동편에 곳간, 서쪽에 육실(燠室)을 짓고 이만큼 남쪽에 루문을 지어 출입하는 대문을 삼았다.¹²⁾

아마 여기의 육실이 제주도에 설치된 구들의 초기의 것이 되겠는데 제주도의 집에는 아직 구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았다. 성호(星湖) 선생의 증언에서 그점을 알 수 있다.

성호선생은 「제주의 풍속은 집을 오량가(五櫟架)로 짓되 가판위청(架板爲廳)하였고 완돌(緩燉)이 없다」고 하였다. 「침어판청(寢於板廳)」하였다 는 것이다. 구들 들이지 않고 마루 깔고 살았고 거기에서 자기도 하였다는 내용이다.¹³⁾

흥화각의 연침(燕寢)이 양청과 육실이 완연히 별조(別造) 되었음이다.

III

궁실이나 관아의 양청시설이 살림집에도 채택되었느냐가 관심거리이다. 세종이 정해서 반포한 가사(家舍) 정제(定制)의 항목중에 내루(内樓)란 단어가 보인다.

- 대군 60간 내루 10간
- 공주 50간 내루 8간
- 이품이상 40간 내루 6간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宮室] 弘化閣조 참고.

13) 星湖僊說 : 李漢. 三人事門 「寢於板廳」조

- 삼품이하 30간 내루 5간
- 서인 10간 내루 3간

세종22년(1440)의 정제 내용이다.¹⁴⁾

내루가 과연 어떤 구조이냐가 의문이다. 태조와 태종실록에도 내루라고 쓴 단어가 보인다. 예를 든다면

1. 태조 7년에 태조는 개국공신들을 불러 내루에서 취토록 마셨다.
2. 태종 3년에 태상왕과 상왕이 내리는 생신축하 주찬(酒饌)을 내루에서 받는다.
3. 태종 4년에 태종은 여성군 민무질(閔無疾)을 내루에 불러들여 장차 한양으로 행차할 일을 의논한다.
4. 태종 5년에 종친들과 더불어 내루에서 잔치한다.¹⁵⁾

네 가지 예는 양청이나 양정에서 잔치하듯이 잔치하는 여렷이 모이는 장소로 표현되어 있다.

제택 내루도 그런 잔치의 장소였는지는 잘 몰라도 중요한 시설이어서 대군의 집 60간에서 10간이나 할애하게 하였다.

구조상 내루는 마루깐 류마루이었다고 보인다. 양청이나 같은 유형의 구조를 지녔다. 그러니까 내루는 구조상 육실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이었다.

가사제한의 법령은 성종도 정한다. 9년(1478)에 가사 간각(間閣) 척수를 상정(祥定)해서 준수하도록 반포한다. 이 법령에서는 내루(內樓)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대군 60간내에 지어도 좋은 건물의 항목을 나열하였는데 「정방(正房) 익랑(翼廊) 서청(西廳) 침루(寢樓)」가 열기되어 있다. 공주의 50간내에서는 「정방, 익랑, 별실(別室)」을 웅주와 이품이하의 40간에서는 「정방, 익랑」을 삼품 이하도 정방과 익랑이 수록되

14) 世宗實錄 卷90 世宗 20年 7月 丁卯 「禮曹啓 大小臣民第舍……」 참조

15) 1. 太祖實錄 卷14 太祖7年 閏5月

2. 太宗實錄 卷5 太宗3年 5月 壬辰.

3. 太宗實錄 卷7 太宗4年 正月 丁巳.

4. 太宗實錄 卷10 太宗5年 7月 丁未.

어 있다. 백성의 집에서는 10간내에 무엇을 지으라는 항목이 없고 대신에 루주장(樓柱長) 11척이라고만 적기되어 있다. 정방, 익랑, 서청이 루가 아니라면 침루만이 다락기둥 쓰는 건물에 해당한다. 백성의 집에 침루 지을 수 있었다면 생략은 되었지만 공주, 옹주나 이품, 삼품들도 침루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침루가 궁내의 루침에 유사하였을지도 모른다. 대군, 공주, 옹주는 어려서 궁내에서 자란다. 루침에서 자 본 경험이 있고 태조의 세자가 바랬듯이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여기고 있었다면 새로 짓는 제택에서 루침을 지을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추세에 마추어 대군 제택에서는 침루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대군이 지으면 공주가 따라하지 못하란 제약을 두기 어렵다. 점점 사치하고 크게 지으려는 경향이 농후해서 중종 때 과제(過制) 한 집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였고, 조선조 초기는 아니지만 현종 때 흥평위(興平尉)는 중층에 건물을 서슴없이 지었다. 공주들의 집 치장과 과제(過制)가 비일비재 하였던 것이다.¹⁶⁾ 공주가 그러면 옹주도 따라 한다. 과제에서 논의되는 중에 옹주의 제택이 적지 않음에서 알 수 있다.

결국 능력 있으면 침루 짓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 제한령에서도 묵인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침루가 세종조의 내루와 대치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 된다.

침루나 내루는 부설되는 구조물이 아니라 별설(別設) 되었던 독립건물이다. 가사제한령의 항목이 그렇다.

현존하는 조선조 초기 제택중에 다락형의 건물을 따로 지은 예를 볼 수 있다. 안동 임청각의 군자정(君子亭)과 같은 건물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현존하는 군자정에는 구들이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후대에 개작에 따른 변모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느덧 옥실(燠室)이 양청에 연합된

상태에서 건조된 건물일 수도 있다.

이런 다락형의 건물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나를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것은 양청, 양루, 내루, 침루, 루침이라고 옛날사람들이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IV

태조의 숙신옹주 제택의 남청이 과연 어떤 건물이었겠느냐의 의문에서 탐색이 비롯되었다.

남청(南廳)은 독립된 건물이었다. 비록 초가이긴 하였지만 경내의 다른 건물들과 견줄만 하였고 포치된 건물중에서 제일 양명한 자리를 차지 하였다. 청이 마루라는 점에서 보아 이것도 다락의 유형에 속하지 않겠느냐고 분류할 수 있다.

우리의 개념에서 루라는 다락은 마루높이가 훨씬 높아야 한다. 그런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청이라 하지 않고 남루라던지 하는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루와는 다르다. 그 다른 부류의 명칭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다.

임청각의 군자정도 다락집은 아니다. 마루가 높게 시설되었을 정도이다. 그런 유형의 건물을 무엇이라 나누어 불러야 하는지의 지견이 우리에게 없다.

군자정처럼 마루를 높은 정도로 시설한 예를 근래의 것은 물론이려니와 백제나 가야 혹은 신라나 고구려인들이 영향력하에 두었었다고 하는 지역의 상대건축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이 우리와 연관된 인연에서 탄생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통하여 우리의 상대건축물을 탐색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개념정리와 용어의 부여가 있어야 한다.

다락의 구조는 다락이나 루의 명칭이 있고 보편화된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 셈이다. 루침이나 침루는 훨씬 마루가 높은 침전유형으로 봐도 우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군자정과 같은 유형이 문제이다.

마루는 지표에서 떨어진 높이에 시설된다는데는 누구나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 마루가

16) 顯宗實錄 卷9 顯宗5年 10月 癸酉

넓직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대청이라 부른다.

청은 다락보다는 낮지만 지표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공간에 마루를 설치한 구조이다. 군자정은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런 청을 조선조에서는 양청(涼廳)이라 호칭하였는지도 모른다. 양청의 개념에 군자정과 같은 구조를 넣어 무리가 없다면 군자정과 같은 유형을 양청류(涼廳類)라고 하여서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제의가 가능해진다.

마루를 설비한 높이에 따라 다락집(루마루집) 양청집으로 나누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견해가 있어 토의되었으면 바라는 바라 하겠다. 토의가 거듭되어 더욱 성숙되가면 간과하고 지내던 한 줄기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